##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류	대 상	방 법
상 주 공 사 감 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 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육을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이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 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